

 <p>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</p> <p>마이홈 포털 www.myhome.go.kr 마이홈 콜센터 1600-1004 마이홈 상담센터 전국 36개소</p>	보 도 자 료		 <p>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</p>
	<p>배포일시</p>	<p>2016. 3. 7(월) 총 4매(본문 4)</p>	
<p>담당 부서</p> <p>주택기금과</p>	<p>담당자</p> <p>• 과장 김홍목, 사무관 유종우, 주무관 김길중 • ☎ (044)201-3351, 3343</p>		
<p>보 도 일 시</p>	<p>2016년 3월 8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7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</p>		

타 지역 실수요자도 세종시 아파트 쉽게 마련한다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」 추진 -

□ 앞으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을 3월 8일(화)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
□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세종시 아닌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 일정비율 배정 근거 마련

○ 세종시의 경우 일정기간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*를 운영 중이나, 해당 주민(공무원 포함)이 대부분의 주택을 당첨 받음에 따라 他 지역 실수요자는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.

* 투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제도(주택 공급규칙 제4조제5항), 세종시는 현재 2년 우대기간 운영 중

- 이에 따라 세종시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(예정지역)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

《 제도개선 후 공급 예시 》

- 세종시 1년(우대기간) 이상 거주자에게 50%를 공급할 경우
→ 1년 이상 거주자 50%, 1년 미만 거주자+기타지역 거주자 50%
※ 거주자 우대기간을 1년으로 정할 경우

- 다만, 세종시 주택공급 및 청약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“시행 여부”와 “세종시 외지역 주택 공급 비율”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

② 공공임대리츠도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의 주택공급 절차, 기준 적용

- 국가(기금)와 한국주택토지공사·지방공사가 출자하는 공공임대리츠(부동산투자회사)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로서 한국주택토지공사·지방공사(일반 사업주체 대비 완화된 기준 적용)와 실질상 동일*하므로

* 공공임대리츠 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이며, 대부분 기금·한국주택토지공사 등 100% 출자사업으로 부도 또는 건설중단의 위험이 없음

- 주택공급 절차·기준 등에 있어서 한국주택토지공사·지방공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

《 공공임대리츠가한국주택토지공사를 준용하는 내용 예시 》

- 예비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장 보고의무 면제(제26조제7항),
- 청약접수 등 업무 직접 수행(제50조제2항)
- 특별공급(다자녀가구·신혼부부 등) 시 소득기준(월평균 소득 120% 이하) 적용

- 공공임대리츠 특성상(한시적 운영) 별도의 인터넷 누리집을 운영하지 않아 자산관리회사(한국토지주택공사 등)의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.

③ 다자녀가구에 주택 최하층 우선배정

- 다자녀가구의 경우 아이들 활동에 따른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최하층을 원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,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최하층 배정이 어려웠음
- 이에 따라 다자녀가구에게도 최하층을 우선배정하도록 함, 다만, 기존 최하층 우선배정 대상자(장애인, 고령자)와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대상자(장애인, 고령자)에게 우선배정

④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보완

- 청약자가 “민영주택”에 청약하는 경우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므로, 유사한 경우인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함

* 국민주택 등 : 주택도시기금 지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급하는 85㎡ 이하 주택

** 민영주택 : 국민주택 등이 아닌 주택

☞ 세대주, 배우자, 세대주의 아버지(60세 이상, 주택 소유)로 구성된 가정

구 분	세대주 청약 시	세대주의 배우자 청약 시
민영주택	무주택 간주	무주택 간주
국민주택등	무주택 간주	명문 규정없음 → (개정후) 무주택 간주

- 개정안은 '16.3.8.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) "정보마당-법령정보-입법예고"에서 볼 수 있으며,

-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※ 의견 제출기간 : '16. 3. 8 ~ '16.4.18(40일간)

의견 제출처 : ☎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
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(☎ 044-201-3343, fax 044-201-5530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유종우 사무관(☎ 044-201-3351, 33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